공동결제시스템(오픈뱅킹) 추진을 위한 은행권 실무협의회 협의사항

2019. 04. 15.

Contents

- 1 실무협의회 추진개요
- 2 참여대상 확대(안)
- 3 이용료 조정(안)
- 4 시스템 운영개선(안)
- 5 추진일정(안)

1 실무협의회 추진개요

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

1. 목적

•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(`19.2.25, 관계부처 합동) 중 공동결제 시스템 (오픈뱅킹)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참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(Working Group)를 운영

2. 참여기관

• 18개 참가은행, 은행연합회, 금융보안원, 금융결제원

3. 협의사항

- [공동 결제시스템(오픈뱅킹) 구축 관련 은행권 합의내용]의 세부사항 정의
- 기타 동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(추진일정 등)

4. 운영경과

- 주 2회 정기 소집 운영(3.7~4.11 까지 총 9회 진행 중)
-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초안을 근거로 핀테크 결제사업자 협의(4.2)

2 참여대상 확대(안)

기존 중·소 핀테크기업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까지 이용기관으로 확대

은행권 합의내용(2.25)

- (이용기관)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 →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+ 은행*
 - * 은행이 자기 고객 외 타은행 고객의 결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도 이용 →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, A은행 자금의 출금이체 가능

- (이용기관) 은행 또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
 -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
 - 공동결제시스템(오픈뱅킹) 운영기관 인정기업
- (제외 대상)
 -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상 사행행위기업
 - 부도기업, 금융질서문란기업
 -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
 - 미풍양속 저해,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(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등)
 - 이용기관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상 필요한 자격(전자금융업자 등) 미달 기업
- (제외 서비스)
 - 출금대행
 - 납부서비스

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우선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가

은행권 합의내용(2.25)

• (제공기관) 일반은행(16개) → 인터넷전문은행(2개) 추가 ※ 향후 저축은행,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적 참여여부 검토

- (인터넷전문은행) 시범실시 전 내부개발 및 전산테스트를 거쳐 제공기관으로 참가
- (한국씨티은행) 공동결제시스템 내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하여 업무 실시
- (상호 호혜적 선순환 구조 형성 추진) 향후 공동결제시스템 생태계 이해관계자(제공기관 및 이용기관) 간 상호 호혜적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

3 이용료 조정(안)

공정 경쟁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<mark>이용료 조정</mark>

은행권 합의내용(2.25)

- (원칙 1) 현행 400~500원/건 대비 상당폭 인하*
 - * 여타 수수료 수준 및 글로벌 시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비 약 1/10 수준에서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
- (원칙 2)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 적용
- (원칙 3)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로 결정

- (이용기관 수수료) 참가은행간 API 처리대행비용(고정)과 주거래은행 수수료(변동)의 합산
- (API 처리대행비용 조정원칙)
 - 이체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~50원 수준(경감비용은 20~30원 수준)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, 처리대행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 공표 예정
 -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(대형)과 경감비용(중소형)으로 분류하여 적용
 - 이용시작 첫 월부터 경감비용을 부과하고, 월간 이용건수 또는 이용금액이 별도로 정하는 경감기준을 초과(3개월 연속)할 경우 기본비용 부과
 - * 단, 금융회사 등의 확인을 거쳐 경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이용시작 첫 월부터 기본비용 부과
 -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



4 시스템 운영개선(안)

신뢰성을 보장하는 (중계)시스템 운영 및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 적용

은행권 합의내용(2.25)

- ①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 증설
 - ※ 기존 운영자인 금결원으로 우선 운영하되,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
- ②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 마련
- ③ 보안성 기준 마련 및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 차등적 적용*
 - * **높은 보안성**을 갖춘 결제사업자 → **자체 방식**(인증, 거래한도 등)을 최대한 인정 일반 보안성을 갖춘 결제사업자 → 인증 방식(금결원) 및 거래한도 등 제한

실무협의회 세부 협의

- (시스템 증설) 참가사업자 사전조사,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업무량 산정 후 초기시스템 구축, 이후 사업자별 업무량 집중 수준, 참가시기 등을 확인하여 탄력적 증설 추진
- (운영시간) 센터는 10분 정비시간,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개별은행 자체 운영시간 감안
- (장애대응) 콜센터 및 운영인력 충원,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(24시간)

(다음 장 계속)

- (자체인증) 일정 재무건전성 및 보안기준*을 충족한 사업자의 경우 펌뱅킹 등에서 적용되는 현행 방식을 우선 고려하되, 향후 은행권·핀테크업계·보안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인증방식 개선** 검토
 - * 재무건전성 및 보안기준 등 세부기준 별도수립 예정(실무협의회 지속 논의사항)
 - ** 인증주체 검토, 보이스 피싱이나 부정거래 방지 등을 위해 거래금액이나 빈도에 따른 거래인증 추가 적용 등
- (거래한도와 보증수단)
 - (중소형사업자) <mark>현행 방식대로</mark>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 징구 단, 보증요구수준은 부정거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조정
 - (대형 사업자) <mark>출금은행이</mark> 여러 리스크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하되, 적정 보증금액에 대해 <mark>자율적 협의</mark> 후 <mark>징구</mark>. 단, 진입방지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보증수준 설정 제한
- (계약관리 방식) 현행대로 이용기관과 결제원 간 단일계약 방식
 - 이용기관 당 하나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되, 해당은행 내 다수의 약정계좌 운용 가능

5 추진일정(안)

연내(4/4분기) 본격실시를 위한 로드맵 수립

은행권 합의내용(2.25)

• 전산구축 및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 세부방안 확정 후 일정기간(예: 6개월) 이후 시행 (필요시 은행권부터 우선 테스트 시행)

- (실무협의회 연장 운영) : ~ `19.4월
- (중계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) : `19.5 ~ 10월
- (제공기관 신규 참가) : `19.9월 부터 (인터넷전문은행 등)
- (은행권 테스트 실시) : `19.10월 부터
- · (본격 실시): `19.12월 부터(모든 핀테크사업자 대상)
 - * 본격 실시시기를 감안하여 대상 기관으로부터 사전(실시 3~4개월 이전) 참가확약서(신청서) 등 접수하고 신청 후 2개월 이내 사전 심사완료할 예정

감사합니다.

문의:은행권 실무협의회 간사

금융결제원 실장 최석민 (strawberry@kftc.or.kr)